

울산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1가단108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C생, 이하 같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55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주)D은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12050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는 (주)D에게 15,666,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6. 6. 확정되었다.

나. (주)D은 2018. 1. 26.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가.항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A의 아버지인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9. 10. 24. 사망하였다. E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A, F, G는 2019. 10. 2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12. 3.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5184호로 2019.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4. 14.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 사이의 위 다.항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21. 5. 20. A는 울산지방법원 2021개회7263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10.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4. 28.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나.항과 같이 양수받은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23. 2. 28.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그 소제기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A가 이를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이준영

부 동 산 목 록

- 1. 양산시 H 대 166㎡
- 2.

